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940 손해배상(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목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가단10236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2.부터 2026.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규정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



3항, 제4항).

나. 원고의 손해액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은 8개이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은 2021. 11. 28.경부터 2024. 8. 1.경까지로 2년을 초과하는 점, 피고는 그 기간 중 2개의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10개 이상의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 점, 피고는 서울 중구 O시장에 위치한 매장 뿐만 아니라 'P'이라는 온라인쇼핑몰과 독립몰, 카카오토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한 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매수한 주요 소매업자 또는 그 상호에 해당하는 'Q', 'R', 'S', 'U' 등이 2022. 11.경부터 2024. 6.경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납부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의 영업 규모, 위 소매업체들과 피고의 거래 횟수와 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인 8,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추가 인용액인 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5.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